

WTO時代 輸出保險의 役割과 發展方向

黃正奉*

目次

I. 序論	3. 輸出保險의 經濟的 效果
II. 輸出保險의 概觀	IV. 輸出保險의 活用과 役割變化
1. 輸出保險의 意義 및 機能	1. 輸出保險의 活用
2. 輸出保險의 擔保危險과 契約締結 方式	2. 輸出保險의 役割變化
3. 輸出保險의 運營種目	3. 主要國의 輸出保險 活用現況
III. 輸出保險의 國民經濟 寄與度	V. 輸出保險의 活性化와 發展方向
1. 輸出保險의 輸出寄與額	VI. 結論
2. 輸出保險의 誘發效果	參考文獻

1. 序論

國際經濟는 開放化와 世界化가 진전되는 한편 유럽단일시장(EU) 출현,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발효로 地域單位 불력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동구, CIS 등의 社會主義 經濟圈이 資本主義 市場經濟圈으로 편입되는 등 新市場을 둘러싼 各國간의 角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輸出去來條件도 信用狀方式에서 D/A, D/P 및 中長期延支給條件의 去來가 增加함으로써 輸出去來上의 危險을 擔保하는 機能의 擴大가 實情이며, 輸出商品 구조에 있어서도 重化學製品 내지 내구성 消費財 위주로 高도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상품구조 高도화에 수반하는 中長期延拂金融의 支援을 가능케 하는 金融선도적 機能의 뒷받침도 필수적으로 要求되고 있다.

이렇듯 去來危險을 擔保하고 金融을 가능케 하며 海外市場開拓 및 商團 確保를 위한 積極的인 마케팅 능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가장 實効性 있는 制度가 바로 輸出保險이다. 특히 國際貿易 秩序에 새로운 規範이 될 UR協商이 妥結됨에 따라 各種 稅制 및 金融上의 直接的인 輸出支援手段에 대한 國際的 規制가 대폭 強化됨으로써 間接輸出 支援手段으로서 凡世界的으로 인정되고 있는 輸出保險制度만이 政府가 支援할 수 있는 유일한 手段으로 그 役割과 重要性이 과거 어느 때 보다는 크게 增大되고 있다.

UR 妥結 이후 GATT規範에 어긋나지 않는 輸出支援制度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

*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副敎授

1) 한국무역협회: [월간무역], 1994. 1. 2호, p. 25.

〈表 - 1〉 GATT에서 許容되는 主要 輸出支援形態

- 1) 市場調査：輸出市場에 대한 情報提供
- 2) 國際貿易展示會：國際貿易展示會의 開催 및 참가에 대한 資金支援
- 3) 輸出振興事務所：自國輸出品에 대한 情報를 提供하여 그 需要를 진작시키도록 海外에 設치하는 事務所
- 4) 政府支援研究：輸出可能性있는 製品開發을 위한 研究 支援
- 5) 輸出信用：輸出入銀行과 같이 輸出金融 및 保證을 擔當하는 기구에 의한 金融支援
단, 조달비용 이상의 金利나 OECD 公積 輸出信用가이드라인 金利와 같은 국제 協약에서 허용하는 金利가 적용될 경우에 한함
- 6) 輸出保險：國際貿易에 있어서의 危險으로부터 보호하는 保險제공, 단, 保險料率이 장기적 인 운영경비 및 손실을 擔當하는데에 명백히 불충분한 水準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7) 間接稅의 還給：제품輸出시 輸入關稅, 販賣稅, 附加價値稅 등의 間接稅 還拂,
단, 直接稅의 還給이나 輸物品에 물리적으로 결합된(정상적소모분 허용) 수입재화에 부과된 것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還給은 허용되지 않음.
- 8) 輸出自由地域：再輸出을 조건으로 關稅를 내지 않고 수입한 물품의 가공, 처리를 위한 지역운영.

우리나라 輸出保險 運營實態를 영국, 독일, 일본 등 여타국들의 運營實態와 比較할 때 과연 우리의 輸出保險制度가 國際貿易環境에 積極的으로 대처하면서 우리의 國際競爭力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方向으로 發展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確信하기 힘든 상황이며 아직은 여러가지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研究와 努力이 必要한 것으로 믿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輸出保險活用率은 불과 6.7% 水準에 머물러 있어 일본, 영국, 프랑스 등 先進國들의 20% 내지 30% 水準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損害率 역시 '88-'92년의 5년간 平均 損害率이 220%로서 같은 기간 미국의 639%, 日本의 598.4%, 英國의 559.4% 등에 비하면 극히 낮은 水準에 머물러 있다. 이는 역사가 일천한 탓도 있으나 先進國들에 비하여 消極的이고 安定的으로 運用한 면도 없지 않으며, 先進國 水準의 진정한 政策保險制度로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問題들이 해결되어야 國內 産業 發展에 輸出保險이 크게 寄與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WTO體制下에서 輸出活性化 戰略의 일환으로 政府의 間接輸出支援策인 輸出保險의 活用을 위하여 먼저 輸出保險制度의 全般적인 현황을 概觀하고 輸出保險의 국민 經濟 寄與度를 效果分析하며, 輸出保險制度 改編內容, 輸出保險의 役割과 重要性, 輸出保險의 發展方向 및 活性化 方案 등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輸出保險의 概觀

1. 輸出保險의 意義 및 機能

輸出貿易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貿易業者간에 행해지는 物品의 賣買로서 특정물품을 外國에 있는 買受人에게 인도하고 買受人은 이에 대하여 代金を 支給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去來이다. 곧, 輸出貿易은 國內商去來에 비하여 商品의 이동거리가 멀고 또 賣買當事者는 언어, 법률, 화폐제도 등을 달라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危險도 國內去來에 비하여 훨씬 크고 복잡다양하다.

이러한 危險을 대별하여 보면, 첫째, 輸出契約의 相對方에게 輸出商品을 運送(Delivery)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危險과 둘째, 輸出商品에 대한 代金決濟(Payment) 측면에서 발생하는 危險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商品의 運送途中에 일어날 수 있는 船舶의 沈沒, 火災 등에 의한 輸出商品의 滅失, 훼손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통상 海上保險에서 擔保하게 된다. 그러나 후자는 輸出契約相對方의 破産, 일방적 契約 破棄 등에 따른 輸出不能, 또는 輸出代金の 회수불능과 輸出契約相對方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초래되는 대금지급지연 危險 뿐만 아니라 輸入國의 戰爭, 內亂, 輸入制限, 換去來制限措置 등의 契約當事者가 제어할 수 없는 輸入國의 정치, 경제적 사정변동에 따른 輸出不能 및 수출대금 회수불능위험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海上保險과 같은 통상의 保險으로는 擔保되지 않으므로 輸出者가 직접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輸出商品에 대한 代金決濟側面에서의 일정한 보호장치가 없이는 輸出者나 輸出商品을 생산하는 生産者로서는 과감한 輸出活動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으며, 동시에 輸出者나 輸出商品生産者에게 輸出資金 또는 생산, 집하, 가공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으로서도 貸出金回收에 대한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없으므로, 필요한 資金을 積極的으로 적기에 供給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輸出去來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危險 가운데서 海上保險과 같은 통상의 保險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危險 즉, 輸出契約相對方의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信用危險(Commercial Risk)과 輸入國에서의 戰爭, 內亂, 換去來의 制限 등의 非常危險(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輸出者, 生産者, 또는 輸出資金을 대출한 금융기관 등이 입게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輸出振興을 도모하기 위한 制度的 보호장치로서의 非營利 政策保險이 바로 輸出保險制度이다.²⁾

오늘날 대부분의 國家에서 輸出保險은 危險을 平均化 하기 위한 "대수의 법칙" 등에 의한 일반적 保險性的 機能보다는 輸出競爭力 強化 機能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輸出保險은 輸出去來上의

2)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1992. 제3호, pp. 37-38

不安全性을 除去하고,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擔保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輸出金融을 원활히 하는 金融補完의 機能을 수행한다. 나아가서 輸出保險은 政府의 支援하에 運營됨으로써 長期的 次元에서 收支均衡을 目標로 하되 可能な한 低率로 保險料率을 策定 보상비율 등에서 輸出者에게 유리한 보상제도를 채택하여 輸出振興政策手段으로 機能한다.

동시에 輸出保險은 保險事故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海外輸入業者에 대한 다각적 信用調査 및 輸入國의 정치, 경제사정을 輸出業者에 제공하게 됨으로 신규 수입원 확보와 輸出去來 擴大 등에도 寄與하게 된다.

輸出保險은 새로운 國際貿易環境에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우선, GATT 제16조에서 輸出保險은 원칙적으로 許容되며 赤字를 長期的으로 낼 만큼 不充分한 保險料率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輸出補助金으로 補正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WTO에서도 현행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輸出保險운용에서 10-20년에 걸친 長期的 赤字가 발생하지 않는 한 輸出保險은 輸出補助金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危險이 없이 効果적 輸出支援 手段으로 活用될 수 있다. 輸出保險은 支援範圍가 輸出분야에 한정되고 실제 保險事故를 입은 企業에게만 保險금이 支給되기 때문에 金利, 換率 등 舉示支援政策手段의 經濟全體에 대한 包括的 波及效果보다는 政策效果의 中立性이 훨씬 높다. 따라서 輸出保險은 非價格 競爭要素로 중요한 機能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날 구.미.일 등 先進國들도 광범하게 活用하고 있는 制度이다.

우리경제의 國際化 戰略은 미.일 편중에서 輸出市場 多邊化, 소품종대량 生産輸出에서 다품종소량수출, 대형해외투자와 함께 小規模 海外投資 등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中小企業들도 輸出擴大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여야만 한다. 92년 11월부터 시행중인 輸出信用保險制度가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輸出保險은 擔保不足과 취약한 信用力을 지니고 있는 中小企業의 輸出促進에 크게 寄與할 수 있다.³⁾

2. 輸出保險의 擔保危險과 契約締結方式

擔保危險이란 保險契約에서 保險者가 그 危險으로부터 발생한 損害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危險으로서, 輸出保險에서는 輸出保險法 제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輸出貿易 기타 對外去來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保險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危險을 擔保하도록 하고 있다.

輸出保險에서 擔保하는 이러한 危險은 통상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3)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1993. 제3호, p. 38.

가. 非常危險 (Political Risk)

非常危險이란 협의로는 輸入國의 戰爭, 革命, 內亂, 暴動 등 政治的 要因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危險을 의미하나, 輸出信用保險에서 一般的으로 사용되는 非常危險은 廣의의 개념이다. 즉, 輸出契約當事者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輸出者가 損失을 입게되는 危險으로 약관상 명기하고 있는 非常危險에는 통상 ① 輸出許可의 取消 등 輸出에 대한 規制措置危險, ② 契約履行을 不可能하게 하는 戰爭, 革命, 內亂 등 政治的인 危險, ③ 外換不足 으로 인한 輸入國의 換去來 制限, 支給猶豫, 輸入國 政策으로 인한 輸入規制措置 등 經濟的 危險, ④ 海外投資에서의 수용위험 등이 있다.

나. 信用危險 (Commercial Risk)

輸入者의 귀책으로 인한 危險 즉, 輸入者가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義務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危險으로 다음 사유들이 이에 해당한다.

- ① 支給不能 (Insolvency) : 支給手段의 계속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輸入者가 債務를 순조롭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輸入者의 파산(Bankruptcy) 등 법률상의 支給不能과 강제관리 등 사실상의 支給不能으로 구분된다.
- ② 支給拒絶 (Repudiation) : 輸入者가 채무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대금지급을 拒絶하는 것으로서, 채무이행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債務契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支給遲滯와는 구분된다.
- ③ 支給遲滯 (Protracted-Default) : 輸入者가 상품을 인수한 후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로서 支給遲滯는 약정된 代金決濟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 ④ 引受拒絶 (Non-Acceptance) : 일반적으로 어음은 만기일을 정하고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는바 어음이 적법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습상의 기간내에 支給인으로부터 유효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 企業危險 (Management Risk)

企業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危險으로서, 기업가의 판매예측이 빗나가거나 또는 기업가의 경영 예측이 어긋남으로써 발생하는 危險을 말한다. 따라서 商業危險의 경우와 같이 契約相對方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가가 부담하여야 할 危險으로서 기업가로서의 능력이 최선의

擔保가 되는 특수형태의 危險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輸出保險 運營種目中 委託販賣輸出保險이 이러한 企業危險을 擔保하고 있다.

輸出保險은 保險을 인수하는 방법에 따라 個別保險 인수방식과 包括保險 인수방식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가. 個別保險

輸出保險契約者가 개개 保險의 목적마다 請約하는 保險方式으로 保險契約의 양당사자는 보험부와 보험인수에 있어 각기 선택할 수 있어서 輸出者로서는 危險이 크다고 생각되는 去來만을 선택해서 부보할 수 있는 한편, 保險者로서도 자신이 負擔하는 危險이 크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나. 包括保險

包括保險은 사전에 保險契約者와 保險者가 包括保險特約을 締結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特定商品 또는 決濟條件 등의 輸出去來를 義務의으로 포괄부보하고 保險者도 이를 自動的으로 포괄인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保險契約者에게 “부보선택의 자유”가 없다.

한편, 保險者의 입장에서는 危險의 역선택을 排除하고 危險을 分散할 수 있게 되어 保險料의 割引惠澤을 부여할 수 있고, 輸出者의 경우에도 미리 締結된 特約에 따라 保險請約書만 제 원칙적으로 인수가 보장되므로 保險者가 인수를 거절할 우려가 없게 되어 안정적 이고 積極的인 輸出戰略을 견지할 수 있을뿐 아니라 부보절차의 간편화로 인한 부대비용 절감 등의 이점이 있게 된다. 현재 保險種目中 輸出어음保險, 中·長期延拂輸出保險 및 輸出保證保險은 個別保險方式과 더불어 包括保險方式도 병행·운영하고 있다.

3. 輸出保險 運營種目⁴⁾

현재 8개 保險種目 및 輸出金融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계되는 損失을 無條件 支給하는 輸出信用保證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일반 消費財 商品의 短期輸出 뿐만 아니라 산업설비, 기계류등의 中長期延拂輸出, 海外建設公社 輸出 및 海外投資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企業의 輸出 및 投資進出과 관련한 모든 對外去來를 그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다.

4) 輸出保險制度 改編內容, 韓國輸出保險公社, 1994. pp. 2-3.

〈表 - 2〉 輸出保險(信用保證) 運營種目

대 상 거 래		보험(보증)종목	주 요 내 용	보험계약자
상 품 수 출	단기거래 (일반상품)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 신용장 및 무신용장방식 2년 이내 수 출거래의 선적전 수출불능 및 선적 후 대금회수불능 위험담보 · 화환어음이 발행되는 신용장 및 무 신용장 방식 단기수출 거래의 선적 후 대금회수불능 위험 담보 · 농수산물수출에 따른 선적전수출불 능, 선적후대금회수불능, 가격상승 위험 담보	수출자 외국환은행 농수산물수출자
	증장기거래 (자본재)	증장기 수출보험 - 공급자신용 - 구매자신용	· 공급자신용거래에 의한 대금회수불 능위험 담보 · 전대차관, 직접대출 등 구매자 신용 거래에 의한 대금회수불능 위험담보	수 출 자 외국환은행
해 외 공 사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보험 - 건설, 엔지니어링 - 장 비	· 은행의 보증서 발급에 따른 위험 담보 · 건설공사에 따른 수출불능 및 대가 미회수위험 담보 · 건설장비 수용 등 위험	외국환은행 해외건설업체 해외건설업체
해 외 투 자		해외투자보험	· 투자원금 및 배당금등의 회수불능 위험 담보	투 자 자
시 장 개 척		시장개척보험	· 시장개척을 위해 무역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예상만큼 수출이 이루어 지지 않음 에 따른 손실 보상	수 출 자
단 기 거 래 (수출금융)		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후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 기관이 동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계되는 손실을 무조건 보상	외국환은행

Ⅲ. 輸出保險의 國民經濟 寄與度

1. 輸出保險의 輸出寄與額

輸出保險이 輸出支援을 통하여 國民經濟에 어느정도 寄與하고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把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輸出保險은 輸出促進을 통하여 우리 企業의 國際競爭力을 향상시키고 開途國에 대한 經濟協力을 強化하는 등 여러가지로 國民經濟에 寄與하고 있다. 그러나 貿易보다도 우선 輸出保險의 國民經濟에 대한 寄與는 輸出促進을 통한 輸出産業과 聯關産業에 대한 需要擴大라고 할 수 있다.

輸出保險의 輸出增進效果는 輸出保險에 가입한 輸出契約 중 輸出代金の 미회수위험이 커서 輸出保險의 支援 없이는 輸出이 不可能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輸出契約의 總額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輸出保險의 輸出寄與額이라고 할 수 있는데 輸出保險통계를 분석한 결과 輸出寄與額은 연도별로 1990년은 5,150억원 1991년은 7,731억원, 1992년은 8,60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1993년은 輸出保險기금의 大幅의인 擴大와 이에 따른 輸出保險公社의 積極的인 保險인수방침에 따라 전년대비 134.4% 증가한 2조 12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總輸出額 824억달러의 약 3%가 輸出保險에 의해 創出되었음을 의미한다.⁵⁾

2. 輸出保險의 誘發效果

만약 輸出保險의 支援으로 신발수출이 1억원 늘어났다면 신발산업의 생산이 1억원 증가될 뿐만 아니라 신발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고무산업이나 신발을 운반하는 운수업 등 여타 關聯産業의 生産도 동시에 增加된다. 이것을 生産誘發效果라고 하는데 産業聯關分析의 결과 輸出保險의 生産誘發效果는 1990년 1조426억원, 1991년 1조5,823억원, 1992년 1조 7,275억원으로 나타났다. 1993년의 生産誘發效果는 전년에 비해 161.3% 증가한 4조 5,142억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GNP의 1.76%에 해당하는 것이다.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輸出산업과 여타 關聯産業의 이러한 生産增加는 窮極的으로 이를 産業에 從事하는 勤勞者와 企業의 所得을 增加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것들을 각각 輸出保險의 附加價值誘發效果와 雇傭誘發效果라고 한다. 産業聯關分析의 결과 輸出保險의 附加價值誘發效果와 雇傭誘發效果는 1992년의 경우 각각 5,440억원과 43.8천명이었으며 1993년의 경우 각각 1조 4,268억원과 113.7천명으로 나타났다. 이것들을 우리경제 전체의 지표들과 비교하여 보면 1993년의 경우 우리나라 GNP의 0.56%가 輸出保險에 의해 創出되었으며 우리나라 전 취업자수의 0.58%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輸出保險이 제공한 것이 된다.

5) 199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출보험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분석하였음

〈表 - 3〉 輸出保險의 國民經濟 寄與度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1990	1991	1992	1993
생산유발효과	1,042,642.4	1,582,324.8	1,727,492.4	4,514,195.4
(생산유발효과/GNP)	(0.61%)	(0.77%)	(0.75%)	(1.76%)
부가가치 유발효과	337,221.9	512,658.8	543,997.7	1,426,755.3
(부가가치유발효과/GNP)	(0.20%)	(0.25%)	(0.24%)	(0.56%)
고용유발효과	28,048.9	38,911.3	43,806.9	113,730.3
(고용유발효과/GNP)	(0.16%)	(0.21%)	(0.23%)	(0.58%)

3. 輸出保險의 經濟的 効果

輸出保險의 國民經濟寄與度を 運營費用에 대비하여 보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平均으로 輸出保險 運營費用 1억원을 투자함으로써 53억원의 輸出을 增加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輸出保險은 運營費用 1억원당 112.8억원의 生産誘發效果와 35.9억원의 附加價值誘發效果를 가져왔으며 285.7명의 新規 採用을 創出하였다.

이렇게 높은 輸出保險의 經濟的 効果는 輸出에 따르는 去來危險을 擔保함으로써 民間輸出자의 潛在的인 輸出能力을 現實化 시킬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하며, 輸出保險 자체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輸出保險의 높은 經濟的 効果는 國內外 景氣가 沈滯되어 潛在的인 輸出能力이 現實化 되지 않을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輸出保險을 경기변동에 맞추어 신속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⁶⁾

〈表 - 4〉 輸出保險의 費用과 効果

(단위 : 억원, 천명)

구 분	1990	1991	1992	1993	누계, 평균
영업비용 (A)	1,220.6 (1,267.3)	994.7 (1,048.1)	706.9 (789.4)	799.1 (916.0)	3,721.3
영업수익 (B)	- (1,056.9)	- (713.9)	- (590.2)	- (574.4)	- (2,935.4)
운영비용 (A)-(B)	163.7 (210.4)	280.8 (334.1)	116.7 (199.2)	224.7 (341.6)	785.9 (1,085.3)
단위당 수출기여액	31.5 (24.5)	27.5 (23.1)	73.8 (43.2)	89.6 (58.9)	53.0 (38.3)
단위당 생산유발효과	63.7 (49.6)	56.4 (47.4)	148.0 (86.7)	200.9 (132.1)	112.8 (81.7)
단위당 부가가치효과	20.6 (16.0)	18.3 (15.3)	46.6 (27.3)	63.5 (41.8)	35.9 (26.0)
취업유발효과	171.3 (133.3)	138.6 (116.5)	375.4 (219.9)	506.1 (332.9)	285.7 (206.9)

()안은 인건비용의 운영경비를 영업비용에 포함한 경우의 비용과 단위당 효과임

6)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1994. 2, pp. 9-13.

IV. 輸出保險의 活用과 役割變化

1. 輸出保險의 活用

WTO體制下에서는 金融 및 稅制의 直接的인 輸出支援制度를 거의 모두 禁止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韓國企業들은 어떤 방법으로 競爭力을 強化하고 輸出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돌파구중의 하나는 輸出保險을 積極的으로 活用하는 것이다. WTO體制가 金融 및 稅制分野에서의 直接的인 支援을 大幅 制限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間接支援手段인 輸出保險은 長期的으로 保險料가 과다하게 저렴한 경우가 아니면 規制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GATT體制 以後 WTO體制를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先進國은 80년대 이후 수출보험사업이 長期間 赤字狀態에 있고 또한 開途國에 대한 協力の 必要性에 따라 輸出保險規制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輸出保險支援은 계속 許容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 輸出市場의 구조 자체도 변화하여 94년에는 開途國에 대한 輸出이 미국, 일본, EU 등 先進國 25개국에 대한 輸出을 앞지르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市場多邊化는 지속적인 輸出成長을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나 이들 開途國은 政治經濟的으로 어렵고 不安定하여 輸出에 따른 危險은 相對的으로 增大된다. 따라서 WTO體制 以後 輸出支援制度의 공백을 메워주고 開途國 등 危險지역에 대한 輸出을 支援하기 위해서는 政府次元에서 間接支援制度인 輸出保險을 積極的으로 活用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 世界單一市場化는 우리에게 競爭이라는 필연 외에 국가간의 합리적이고 조화있는 協력이 매우 중요하다.

國家間 經濟協力の 手段으로서 미국, 일본 등 先進國이 輸出保險을 충분히 活用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國際化와 世界化의 시점에서 깊은 關心을 가져야 할 分野이다. 危險이 있더라도 協力次元에서 支援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시장확보라는 경제적 목적은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 方法이다. 특히 民族의 숙원인 統一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간의 經濟協력에 輸出保險을 積極活用하는 것도 可能하리라고 본다.

2. 輸出保險의 役割變化

輸出保險史上 처음으로 인수실적이 3조원을 상회하고 輸出保險活用率도 3% 水準에서 6.70% 水準으로 높아졌다.⁷⁾ '94년도 계약체결한도가 5조 80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기금출연으로 政府豫算에 800억원이 計上되어 있어 94년에는 수출보험사업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輸出保險이 先進國 水準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리의 輸出保險活用率과 損害率은 선진제국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水準에 머물러 있다. 일본이 지금의 우리와 輸出규모의 水準이 비슷했던 70년대에 輸出保險活用率이 50%였고 오늘 날에도 30%를 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는 輸出保險을 너무나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7)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1994. 11, p. 99.

〈表 - 5〉 最近 10년간 輸出保險活用率

(단위 : 억불)

구분 연도	수 출 액			보 험 인 수 액 ¹⁾			활 용 율 (%)	
	상 품 수출액 (A)	진 설 수출액	합계 (B)	상품수출관련 인 수 액 (C)	건설 및 해외투자 관련 인수액 ²⁾	합 계 (D)	총수출 활용율 (D/B)	총상품 수 출 활용율 (C/A)
1985	302.8	46.9	349.7	13.5 (11,998.5억원)	1.5 (1,377.9억원)	15.0 (13,376.5억원)	4.30	4.45
1986	347.2	22.4	369.6	10.4 (8,963.0억원)	1.8 (1,565.5억원)	12.2 (10,528.5억원)	3.30	3.30
1987	472.8	17.1	489.9	3.5 (2,807.9억원)	1.9 (1,502.6억원)	5.4 (4,310.5억원)	1.11	0.75
1988	607.0	16.0	623.0	2.34 (1,603.6억원)	0.61 (415.2억원)	2.95 (2,018.8억원)	0.47	0.39
1989	623.8	24.1	647.9	4.59 (3,116.7억원)	0.87 (593.4억원)	5.46 (3,710.1억원)	0.84	0.74
1990	650.2	67.7	717.9	21.4 (15,329.8억원)	2.2 (1,558.2억원)	23.6 (16,888.0억원)	3.29	3.29
1991	718.7	30.4	749.1	19.3 (14,146.1억원)	1.2 (930.7억원)	20.5 (15,076.8억원)	2.74	2.69
1992	766.3	27.8	794.1	23.4 (18,408.1억원)	3.2 (2,530.6억원)	26.6 (20,938.7억원)	3.30	3.10
1993	822.4	51.2	873.6	43.7 (35,353.5억원)	1.7 (1,368.3억원)	45.4 (36,721.8억원)	5.20	5.30
1994	667.1	45.2	712.3	44.4 (35,475.6억원)	2.1 (1,677.9억원)	46.5 (37,153.5억원)	6.50	6.70

주 1) 한국은행 국제수지과 자료(관세청이 집계하는 통관기준 輸出액)

2) 海外建設協會 資料

3) 海外建設公社保險, 海外投資保險, 輸出保證保險의 인수액 합계임.

4) 1992년 이후의 保險 인수액은 保險가액 기준임

적용환율은 연월만 현재시장평균 매매기준율(시장평균환율)임

이제 우리나라 輸出은 과거의 先進國 위주 구조를 탈피하여 相對적으로 去來 危險이 큰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輸出의 지역별 구조를 보더라도 '89년에 전체 輸出의 26.5%에 불과하던 開途國의 比重이 91년에는 37.8%, 93년 47.6%, 94년에는 50%에 가까워지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輸出保險은 단순히 企業次元의 對外去來危險 관리수단으로서가 아니라 國民經濟次元에서 輸出과 成長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로서의 役割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들어 輸出保險은 輸出金融을 補完하는 消極的 役割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金融을 선도하는 積極的 機能을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輸出의 상품별 구조가 과거의 輕工業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重化學工業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에 있고 플랜트, 선박같은 대형거래가 急增하고 있어 輸出保險에 대한 수요가 장기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中長期延

拂輸出에 대한 輸出資金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輸出保險의 부보가 金融支援與否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이제 輸出保險은 오히려 輸出金融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해졌다.

輸出保險의 役割과 관련하여 한가지 덧붙일 것은 輸出保險도 머지않아 國際的 規制를 받게되고 政策的 輸出支援手段으로서의 役割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輸出保險이 아직까지는 國際的으로 용인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開途國들이 너도나도 輸出保險制度를 도입하고 있어 先進國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制限을 가할 필요를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나간 동경라운드에서 채택한 GATT반덤핑 相計關稅 코드에 이미 輸出保險이 補助金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다가오는 國際的 規制에 對備하는 次元에서라도 우리는 輸出保險을 최대한 活用해야 하며 하루빨리 우리의 輸出保險제도를 先進國 水準으로 발전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輸出保險活用率을 '97년까지 先進國 水準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매우 과감한 인수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수가 과감해지면 保險事故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나 保險은 本質的으로 危險을 관리하는 手段이다. 더구나 輸出保險은 政策保險이다. 따라서 損害率이 낮다는 것은 輸出保險이 그 만큼 제 役割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⁸⁾

〈表-6〉 연도별 인수 및 보상실적

(단위: 천원, %)

구분	인 수 실 적			보 상 실 적		
	건 수	보 험 금 액	보험료(A)	건 수	보 험 금 (B)	사고율(B/A)
연구						
1969-85	20,892	7,480,382,022	38,015,618	366	148,644,625	200.2
1986	2,279	1,052,845,664	9,561,756	47	1,772,612	18.3
1987	1,896	431,057,260	4,229,623	6	195,888	4.6
1988	1,944	201,879,057	2,033,684	12	268,293	13.2
1989	4,003	371,009,647	1,240,307	31	1,046,126	84.3
1990	16,249	1,688,798,921	4,389,038	474	43,023,312	980.2
1991	21,203	1,507,677,993	5,851,865	78	12,027,581	205.5
1992	22,396	1,803,558,222	6,179,391	65	13,581,870	219.8
1993	35,007	3,032,699,461	23,398,975	135	8,231,163	37.8
1994 (9)	35,538	3,179,712,397	23,008,453	51	2,335,690	10.2
계	161,477	20,749,620,644	117,908,710	1,284	231,697,118	196.5

8)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1993.12, pp.2-4.

구분 연구	회 수 실 적			보 상 실 적		
				지 급 년 도 기 준		
	인수연도기준 회 수 금	지급연도기준 회 수 금	회수연도기준 회 수 금	건 수	보험금(C)	사고율(C/A)
1969-85	3,352,220	1,621,261	758,594	297	7,565,786	19.9
1986	992,757	1,798,656	636,280	54	5,775,405	60.4
1987	103,711	291,666	957,032	40	1,960,861	46.4
1988	28,054	125,640	265,911	7	1,369,546	67.3
1989	2,412	453,665	449,116	15	1,380,441	111.3
1990	449,925	167,552	325,982	17	66,989,404	1,526.3
1991	3,661,611	286,899	375,784	143	43,386,368	741.4
1992	792,607	207,768	343,761	385	40,461,295	654.8
1993	1,098,629	4,685,013	3,655,488	135	34,368,805	146.9
1994 (9)	336,725	1,110,531	2,980,703	191	28,439,215	123.6
계	10,748,651	10,748,651	10,748,651	1,284	231,697,118	196.5

3. 主要國의 輸出保險 活用現況

(1) 영국의 輸出保險制度

영국의 경우 民間企業에 의한 信用保險業務는 1800년대의 초기부터 행해졌지만 政府에 의한 輸出信用保險業務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날의 ECGD(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의 기초가 확립된 것은 1926년 이후이다. ECGD는 貿易省 산하에 있는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그 주요기관은 輸出保證 및 海外投資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국상품이나 기술용역의 대외공급자에게 保險 및 保證을 해줌으로써 輸出을 促進시키고 있다. 최근 영국의 ECGD는 1991/92회계년도 중 일부 아시아지역 개도국에 대한 신규사업규모를 크게 擴大한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유효계약액이 1990/91 회계년도 말의 256백만 파운드에서 1991/92 회계년도에는 689백만 파운드로 급증하였으며 ECGD의 10대 시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국의 유효계약액이 178백만 파운드로 2위로 차지하였다. 이처럼 영국은 개도국에 대한 輸出의 危險을 輸出保險으로 커버함으로써 輸出市場의 擴大를 避하고 있다.

(2) 미국의 수출保險制度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한 유럽제국의 貿易停滯는 미국상품의 판로확장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대전 후 점차 치열해지는 國際貿易競爭의 와중에서 미국에서는 상호조직에 의한 단체企業,

즉 미국제조업자 外國信用保險去來所로서 輸出信用保險制度가 발생하였다. 이 去來所는 환화에 대하여 保險證券을 발행하여 輸出貿易에서의 買受人의 支給不能을 擔保한 것이지만 상호조직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고 간편하게 保險에 가입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輸出保險가 관련된 기관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인 미국 輸出入銀行과 非營利 法人인 미국 輸出保險協會와 미국정부 산하의 독립된 公社인 海外民間投資公社 등이 있다. 최근 미국輸出入銀行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중미의 5개 소국에 대한 輸出保險支援을 위한 TCIP(Trade Credit Insurance Program)을 운영중인데, 同制度는 미국의 상업은행이 중미지역의 信用狀開設銀行 앞으로 Credit Line을 설정할 경우 미국輸出入銀行이 해당거래에서의 危險은 擔保하고 이에 대한 미국 국제개발처가 소국 輸出入銀行을 再保險形式으로 支援을 하는制度이다. 미국輸出入銀行은 1993회계년도중 중미지역의 輸出保險을 위해 同 TCIP의 支援한도를 2억 달러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일본의 輸出保險制度

先進國 중 輸出産業比重이 비교적 높은 일본은 輸出保險 支援에 있어서 가장 積極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輸出保險制度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시행된 輸出보상制度에서 유래되었으나, 현재의 기틀이 형성된 것은 1950년 輸出信用保險法이 제정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日本 輸出保險制度의 특징은 다른나라에 비하여 정책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즉 政府가 輸出保險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輸出擴大, 經濟協力 등 일본 政府의 대외거래정책의 直接的인 手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日本 輸出業界의 輸出保險利用率 역시 1987-91년중 年평균 30.6%로서 가장 높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輸出保險制度는 대상으로 하는 危險의 범위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貿易형태에 따라 가장 취약한 부분이나 국가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점들에 대하여 保險이나 保證의 방법과 手段을 쓰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貿易依存도가 높은 영국, 일본 등은 이 制度를 일찍이 실시하여 광범위한 분야에 保證을 하고 있다.

이처럼 輸出保險制度가 중심적인 輸出支援制度로 정착되어 있는 선진 각국은 자국 輸出保險制度의 競爭力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기존시장의 확보, 유지 외의 새로운 海外市場의 開拓에 전력하여 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先進國 輸出保險기관들의 운영수지에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1987-91년 중 5년간 선, 後進國의 輸出保險 운영실적을 보면 17개 先進國의 경우 損害率이 평균 54%로서 後進國의 165.5%에 비해 거의 3-4배로 높은 실정이다. 같은 기간 중 先進國의 평균 保險料率이 1.2%로서 後進國의 0.7%에 비해 0.5%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先進國의 輸出保險 損害率이 이처럼 後進國의 3-4배 水準을 나타낸 것은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 아래 海外市場 開拓 및 확보를 위한 積極的인 保險運營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V. 輸出保險의 活性化와 發展方向

'95년에는 지난 47년간 世界貿易秩序를 이끌어 왔던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인 GATT體制에서 世界貿易機構인 WTO體制로의 전환이 확실해져 가고 있으며, WTO體制 以後 國際貿易環境變化的 전망으로 世界經濟의 開放이 가속화되고 자유무역주의가 強化될 豫想이며, 企業의 國際化和 世界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國際貿易 秩序에 새로운 規範이 될 WTO體制 出帆에 따라 各種 稅制 및 金融上의 直接的인 輸出支援手段에 대한 國際的 規制가 대폭 強化됨으로써 間接輸出支援手段으로서 법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輸出保險制度만이 政府가 支援할 수 있는 유일한 手段으로 그 役割과 重要性이 증대되고 있다. 시급한 과제로서 輸出保險의 活性化와 先進國 水準의 진정한 政策保險制度로서 뿌리 내리기 위한 몇가지 發展方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輸出保險기금의 擴充이다.

積極的이고 彈力性 있는 보험인수를 위해서는 강력한 자본력의 뒷받침이 필수 요건이며 종국적으로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保險公社로 하여금 輸出保險을 통한 실질적인 支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본력의 확충을 위한 基金의 擴大가 절실하다. '93년말 輸出保險基金은 1,043억원으로 보험책임잔액 2조 2천4백억원의 4.6%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는 先進國의 10-20% 水準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水準이다. '97년까지 輸出保險基金을 5,300억원까지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輸出保險公社와 통상산업부가 基金擴大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예산당국의 積極的이고 확실한 支援이 요구된다. 國家 競爭力의 強化를 통한 수출신장이 최우선 목표인 마당에 가장 直接的이고 効率的인 手段에 과감한 支援이 필요하다.

영세한 輸出保險基金을 우리나라가 '96년 OECD에 가입하기 이전까지 豫想保險責任殘額의 15분의 1 水準인 최소 5천억원까지 擴大하면 더욱 積極的인 輸出保險支援을 할 수있다. 이탈리아는 10분의 1, 캐나다는 4분의 1, 벨기에에는 16분의 1 등 대부분의 先進國 輸出保險기관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책임잔액에 대한 基金水準은 참고지표가 될 수 있다. 일본 등 先進國은 政府가 국가계정을 통해 수출보험기관의 擔保能力을 초과하는 危險去來를 거의 무한대로 支援하는 국가계정(국익계정)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⁹⁾

9) 全國經濟人聯合會, 全經聯, 1994. 11. p. 18.

〈表-7〉 연도별 輸出保險基金 조성계획

(단위: 억원)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인수에상액	33,000	53,008	82,378	112,334	150,683
예상수출보험이용율(%)	6.2	7.9	11.1	13.7	16.4
보험책임잔액(A)	20,921	31,594	48,448	62,963	79,121
기금조성액(누계) (B)	1,044	2,106	3,230	4,198	5,275
B / A (%)	4.6	6.6	6.6	6.6	6.6

'92년 이후기금조성액은 保險책임잔액의 6.6% 水準

자료: 韓國輸出保險公社

2. 輸出保險의 인수제한의 緩和과 인수확대가 요망된다.

輸入國이나 輸入者의 信用度, 輸出品目 및 契約內容 등에 따라 많은 제약요건을 설정하여 사실상 인수를 制限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保險公社가 危險要素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包括保險의 기본취지를 흐리게 할 수 있고 자칫 인수방침의 설정, 운영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국가 危險의 판단에 관하여는 특정 輸出대상 국가가 중장기적 관심에서 將來성과 潛在力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면, 비록 외환사정 등 현존하는 가시적 危險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국익차원에서 支援을 계속해야 한다.

인수가 과감해지면 保險사고가 발생할 可能性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나 保險은 본질적으로 危險을 관리하는 手段이다. 더구나 輸出保險은 政策保險이다. 따라서 損害率이 낮다는 것은 輸出保險이 그만큼 제할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損害率 자체가 관리목표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損害率이 先進國水準에 이를 때까지는 보다 과감함 인수가 필요하다. 또한 인수의 積極化에 못지않게 인수의 效率化도 중요하다. 동일한 금액의 인수실적으로도 또한 동일한 규모의 보상재원으로 輸出增大效果는 크게 다를 수 있다. 公社는 인수가 輸出에 미치는 乘數效果가 極大化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국제기관간의 協力과 對外協力基盤의 構築 및 強化가 요구된다.

輸出關聯 국제간협력분과에서는 이제 輸出保險은 우리의 국익을 대변하는 공식적인 대표자로서의 활동영역을 擴大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96년 OECD에 가입하기 이전이라도 輸出保險 및 中長期延拂輸出과 관련이 있는 OECD 貿易委員會 산하 수출신용분과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참여해야

하며, 현재 輸出保險公社가 회원으로 있는 BERNE UNION(국제信用 및 투자 保險자 연맹)에의 참여활동을 強化하여 앞으로 WTO의 規制와 관련한 사전대처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輸出保險公社가 프랑스의 輸出保險기관인 COFACE나 독일의 HERMES같은 세계적으로 비중있는 기관으로서 성장하여, 世界輸出保險연맹의 BERNE UNION같은 국제협의체에서 활동도 積極的으로 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

4. 공격적인 海外마케팅의 추진을 위해 海外마케팅 保險制度를 도입하여 企業의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輸出마케팅을 強化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마케팅 기지로서의 해외지사 설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海外마케팅 保險制度를 도입하여 企業의 마케팅 의욕을 고취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國際貿易去來의 결제방식에 있어 輸出入者間의 信用을 바탕으로 한 D/A, D/P등 無信用狀 方式의 比重이 점차 增加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L/C開設시 수입자 입장에서는 開設手數料를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 開設銀行 앞 담보제공, 수입대금 사전예치 또는 여신한도 적용 등에 따른 추가적인 금융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C방식에 의해 去來를 하고 있던 기존 Buyer에게 부분적으로 無信用狀 方式을 許容하는 경우 수입자의 비용경감액 만큼 輸出단가를 인상할 수 있고, 信用供與를 조건으로 접근하는 타경쟁업체에 대해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¹⁰⁾

5. 합리적인 輸入마케팅을 위한 資源開發保險制度를 신설하는 것이다.

輸出競爭力提高를 위해서는 合理的인 輸入마케팅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資源開發保險制度를 신설함으로써 個別企業 單位로는 추진하기 곤란한 開發輸入을 活性化시켜 資源을 安定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원자재공동구매자금을 支援함으로써 업종단체별 공동구매를 통한 대량구매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토록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輸出保險도 輸入保險의 범위를 포함시켜 貿易保險이나 輸出入保險 또는 通商保險으로 危險과 擔保범위를 광의로 개념정의를 해야 할 시기이다.

6. 신종 保險種目の 開發導入이 필요하다.

WTO體制下에서 새로운 國際貿易秩序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危險으로부터 輸出入業者, 생산자, 금융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保險種目을 개발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10) 韓國輸出保險公社 부산지사, 輸出保險情報, 1994. 3. 17, p. 5.

1) 輸出用 原資材 輸入保險의 도입이다.

輸出去來에만 한정하여 輸出保險을 운영할 경우 이 부문의 통상마찰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출용原資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國內 輸出者가 海外原資材 공급자에게 그 代金を 전부또는 일부를 선불한 경우 약정일에 原資材 입수가 非常危險 및 信用危險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를 擔保하는 保險이다.¹¹⁾

2) 連繫貿易(Countertrade) 保險의 導入이 필요하다.

외환이 부족한 상대국과의 貿易에서 자주 이용되는 貿易形態로서 특히 저개발국 및 북방국가와의 무역증진을 위하여서는 이러한 形態의 貿易을 전략적으로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輸出과 輸入이 連繫되는 貿易形態에서 輸出入 차액에 대한 信用危險과 非常危險을 擔保하는 保險이다.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류나 향후 남북한 경제교류가 擴大될 경우에 대비하여 導入이 필요하다.

3) 換率變動保險의 導入이다.

우리의 企業이 換率變動에 따라 환차익보다는 환차손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본대만과 영국등에서 실시중인 換率變動保險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換率制度는 變動換率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독일의 마르크, 영국의 파운드 등의 환율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게 되므로 이에 대한 危險을 擔保하는 것이다.

4) 資源開發保險制度를 신설해야 한다.

輸出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輸入마케팅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資源開發保險制度를 신설함으로써 個別企業 단위로는 추진하기 곤란한 개발수입을 활성화시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原資材 공동구매자금을 支援함으로써 업종단체별 공동구매를 통한 대량구매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5) 기타 仲介貿易保險, 물류비, 生産費保險 등이 있으며, 國際貿易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危險으로부터 國內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제공保險, 海外廣告保險, 展覽會保險 등의 새로운 保險種目 開發 및 導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동구권과 남북한 交易에 대비하여 統一交易保險, 輸出 Factoring保險, Forfeiting 保險, BOT保險의 신증목을 導入할 수있다.¹²⁾

7. 대북교역에 輸出保險支援이 필요하다.

현재 南北協力基金에서 支援되고 있는 대북교역 및 투자손실보전업무를 輸出保險公社로 인관시

11) 공신영·성문기,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창원대, 산경연구 제10집, 1993. 12, p. 239.

12) 韓國貿易協會, 월간무역, 1994. 1-2, p. 27.

키고 南北協力基金은 經驗대출 輸出補助등 순수한 經驗확대지원에만 집중할 방침이다. 대북교역이 活性化될 것에 대비해 북한으로 物品을 搬出하는 國內企業을 輸出保險으로 적극 支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輸出保險이 제3국을 통한 間接교역 뿐 아니라 대북직교역과 투자 등도 적극 인수 損失이 발생했을 경우 損失額의 90%까지 保險금을 支給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輸出入銀行이 관리하고 있는 南北經濟協力基金은 대북경험으로 발생한 손실액의 90%를 보전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輸出保險公社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輸出保險公社는 90년 10월 코오롱상사의 제3국을 통한 대북반출입건을 輸出保險으로 인수한 이후 대북교역인수실적이 현재까지 한건도 없다. 앞으로는 南北間의 交易은 輸出保險을 積極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8. 國際的인 Consulting기관에 준하는 組織과 人力의 양성이 필요하다.

輸入者 信用調査와 國別신용평가는 인수정책의 수립 및 정보지원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國際的 Consulting기관에 준하는 組織과 人力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國別신용평가는 역사적 환경 및 문화적 차이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로의 獨自的 판단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公社는 輸出保險사업의 주체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積極的으로 世界經濟의 흐름과 國別경제동향 및 신용평가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조사분석연구하여 輸出支援에 直接 寄與해야 한다.

VI. 結 論

國際貿易環境이 UR妥結 및 WTO體制出帆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各種 補助金이나 稅制上의 惠澤 등 輸出業界에 대한 政府의 直接的인 支援에 대해 國際的인 規制가 強化되고 있어 輸出保險과 같은 間接支援方法이 점차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對外去來條件도 信用狀條件에서 D/A 및 D/P 등 無信用狀條件으로 輸出比重이 늘어남에 따라 信用危險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海外市場擴大를 위하여 非常危險이 다소 높은 지역에도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國際貿易環境의 변화에 따른 輸出保險의 重要性 및 役割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輸出保險活用率을 先進國 水準으로 제고시키고 先進國 水準의 진정한 政策保險制度로서 뿌리내리기 위한 몇가지 輸出保險의 活性化方案과 發展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輸出保險基金의 擴充으로 '96년 OECD에 가입하기 이전까지 豫想保險責任殘額의 15분의 1 水準인 5,000억원까지 擴大해야 한다.

둘째, 輸出保險의 인수제한의 緩和와 인수확대가 요망된다.

셋째, 국제기관간의 協力과 對外協力基盤의 構築 및 強化가 요구되며,

넷째, 攻撃的인 海外마케팅의 推進을 위해 海外마케팅 保險制度를 導入하여 企業의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다섯째, 合理的인 輸入마케팅을 위한 資源開發保險制度를 신설해야 한다.

여섯째, 새로운 保險종목의 개발도입이 필요하다. 輸入保險, 連繫貿易保險, 換率變動保險, 資源開發保險, 仲介貿易保險, 기술제공保險, 海外廣告保險, 統一交易保險, 輸出Factoring保險, 展覽會 保險 등이 導入가능하다.

일곱째, 대북교역에 輸出保險支援이 필요한 시기이며 積極的으로 活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國際的인 Consulting 기관에 준하는 組織과 人力의 양성이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1. 이시환, 貿易保險論, 大旺社, 1994.
2. 韓國貿易協會, 월간무역, 1994. 4外. 各年월호.
3. 韓國輸出保險公社 부산지사, 輸出保險制度 改편내용 설명회, 1994. 11. 18.
4. 韓國輸出入銀行, 輸銀調查月報, 1994. 3. 外 各年월호.
5.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各年월호.
6. 韓國輸出保險公社 부산지사, 輸出保險정보, 1994. 3. 17, 外 各 日보.
7.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制度 改편내용, 1994.
8.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1994. 3 外 各年월호
9. 韓國輸出保險公社, 수은소식, 1994. 9 外 各年월호
10. 김제양, 輸出어음保險 사고보상에 대한 고찰, 명지대 경제논총, 제9집, 1993. 10.
11. 임익상, 主要國의 輸出保險制度, 입법조사월보, 1993. 4.
12. 노승혁, 韓國輸出保險制度의 活性化 方案, 성심외전 산학협동연구, 1993. 7.
13. 안충명, 輸出競爭力 強化를 위한 輸出保險의 증장기 발전방안, 輸出保險, 1993. 7.
14.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業務現況, 1992. 8. 31.
15.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어음保險 包括保險制度 案內, 1994.
16.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信用保證制度 解説, 1994.
17. 韓國貿易協會, 남북교역실무길잡이, 1994. 7.
18. 박진근, 輸出재도약과 대외경제협력증진을 위한 輸出保險의 役割, 輸出保險, 韓國輸出保險公社, 1992. 4.
19. 이은수, 輸出保險의 役割과 보상, 輸出保險, 韓國輸出入銀行, 1991. 제4호.
20. 이인용, 貿易環境變化와 中小企業構造調整의 政策方向, 입법조사월보, 국회사무처, 1993. 6.
21. 日本輸出保險協會, 輸出保險制度의 解説, 1992.
22. 정홍주, 우리나라 輸出保險 損害率에 관하여, 韓國經濟 제19권 제1호, 성균관대 韓國産業研究所, 1992, 10.
23. 韓國輸出入銀行, 輸出保險, 各年월호.
24.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制度의 韓日間 比較, 輸出保險, 1993. 10.
25.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KEIC, Annual Report, 1992. 1993.